

4-5. 우발부채 현황

- 우발부채는 **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**를 의미하며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·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2021년	2022년	증감
계		0	0	
보증채무 부담행위	소계	0	0	
	자산유동화 증권 ^①	0	0	
	금융기관 차입금 ^②	0	0	
예산외 의무부담	소계	0	0	
	공공토지비축협약 ^③	0	0	
	부지매입협약 ^④	0	0	
	비용부담 협약 ^⑤	0	0	
	기타 협약 ^⑥	0	0	
BTO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		0	0	
채무부담행위(미발생액)		0	0	

- ▶ 관계기관(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및 출자·출자기관)간 상호 보증·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
- ▶ '22년 결산부터 우발부채 항목 및 용어 등 수정(「우발채무 선제적 관리방안」('23.5.)에 따라 우발채무 분류체계 확정)
 - ※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매입확약 등은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관리(한국예탁결제원 기준)
- ▶ ① 자치단체에서 자산유동화증권*(대출채권, 매출채권 등)을 매입하는 확약으로 제3자의 채무를 대신 지는 것
 - *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(부동산, 매출채권, 대출금 등)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채권시장에서 유통
- ▶ ② 금융기관에서 건설사, 농업인, 소상공인, 취약계층 등에 사업자금 등을 대출해주고 이를 자치단체에서 보증하는 것
- ▶ ③ 공공택지, 산업단지, 도로·철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LH 토지은행과 협약
- ▶ ④ 산업단지, 공동주택 조성 등 자치단체가 일정 시점에 미분양 부지매입, 책임분양 등을 부담하는 협약
- ▶ ⑤ 사업시행자, 협약 당사자 등과 투자 비용, 금융비용, 운영 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
- ▶ ⑥ 교육청, 대학교 등과 협약을 맺어 학교 용지 부담 및 시설 건립사업, 각종 사업비 지원 등

❖ 지급보증(보증채무부담행위)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발생연도	유형	행위명	제공 받은자	보증 채무액	부채 계상액	채권자	제공사유
		해	당	없	음			

❖ 예산외 의무부담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약정 유형	행위명	사업자	약정 금액 (최대손실 추정액, 우발부채)	총 사업비	사업 기간	약정 내용
		해	당	없	음		

❖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업명	운영권자	총사업비	계약기간	재정지원 협약내역	중도해지 환급금 내역	향후 부담 추정액
		해	당	없	음		

❖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발생연도	행위명	내용	채무부담 행위금액	피제공자	부채 계상액
		해	당	없	음	

▸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('23.12. 예정)